

이천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 자치교육과

제정 1996·3·1 조례 제 136호
일부개정 2020·2·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통·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통·리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리에 통·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통·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사업 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통·리 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동장, 통·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통리장 및 예비군 통·리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통·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통리개발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통·리장 및 예비군 통·리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하도록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28>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및 간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 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 ② 서기는 위원 또는 통·리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